

# 입점 및 상품 선정 기준



2020.12.18 제정  
2021.06.17 개정  
2026.01.01. 개정  
2026.03.01 개정

주식회사 홈앤쇼핑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식회사 홈앤쇼핑(이하 “회사” 라 한다)이 「입점시스템」을 통해 입점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회사와 거래를 희망하는 협력사에 대해 균등한 입점기회를 제공하며, 입점 전 상품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구매 가치 있는 상품을 선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구매 만족도를 높이고 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입점시스템」을 통하여 제안 받은 상품 중 TV방송 상품을 선정할 경우, 다른 사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품이란 협력사가 회사의 TV방송을 통해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제안한 모든 물품을 말한다.
2. 상품성이란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 ① 이 기준은 회사의 「입점시스템」 (<https://join.hnsmall.com/main>) 및 「협력사 파트너스 시스템」 (<https://partners.hnsmall.com>) 내 게시판 등을 통해 공지하고, 필요 시 방송을 위한 상담 진행 시에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회사는 매월 신규 및 기존 협력사 교육(주관부서 교육)을 통하여 이 기준을 지속적으로 고지하고 협력사와 공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 2 장 입점 기준 및 절차

**제5조(입점 제안)** 입점 제안은 회사 「입점시스템」 (<https://join.hnsmall.com/main>) 의 ‘입점 상품 제안’ 메뉴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입점 심사)**

- ① 회사는 입점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회사와의 거래를 희망하는 협력사에게 균등한 입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입점 제안 상품 및 협력사를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 ② 입점 제안 접수 후 접수일 기준 영업일 5일 이내에 담당 MD를 배정하고 팀 단위 서류 심사를 진행한다. 팀 단위 서류 심사 결과는 협력사가 등록된 SMS 및 이메일로 안내되며, 입점시스템 내 ‘입점 제안 결과 조회’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③ 입점 제안을 통과한 상품은 담당 MD 상담을 거쳐 상품 선정 절차를 진행하며, 선정 기준은 이 기준 「제3장 상품 선정 절차 및 기준」을 따른다.

**제7조(입점 기준)** 회사의 TV홈쇼핑 방송을 위한 상품 및 협력사 선정 시, 불건전한 협력사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최소화하고자, 협력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입점 가능 여부를 평가한다.

1. 회사는 협력사의 과거 경영실적 및 안정성을 바탕으로 재무 건실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공인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별표 제1호]의 기준을 충족한 협력사에 대해서만 방송상품 입점을 허용한다.
2. 회사는 상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 또는 A/S 발생 시를 대비하여 협력사의 A/S 이행 능력을 확인하며, A/S 이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폐업 또는 부도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입점 제안을 제한할 수 있다.
3. 회사는 상품의 성격에 따라 협력사에 대하여 추가 검증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 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
4. 회사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규칙인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64조(방송금지)에 해당하거나 기타 방송심의 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입점 제안을 반려하며, 그 사유를 협력사에 고지하여야 한다.
5. 회사는 입점이 완료된 협력사에 대해서도 위 기준에 따라 운영 지속 여부를 평가할 수 있으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타 협력사의 과실로 인하여 회사 또는 소비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회사는 협력사에 즉시 퇴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사 등록)**

- ① 회사의 상품 선정 절차에 따라 상품이 최종 선정되어 입점이 확정된 협력사는 협력사 정보를 등록하고, 회사가 요청하는 입점 필수 서류를 「입점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입점 필수 정보 외에 상품 원가, 타사 매출액 등 협력사의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 ③ 등록된 협력사 정보는 담당 MD가 확인 후 내부 검토 절차를 진행하며, 협력사 등록 정보 검토 및 입점 승인 완료 후 전자계약을 체결한다.
- ④ 기존에 회사의 홈쇼핑 방송을 통해 상품을 판매한 이력이 있는 협력사는 협력사 등록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단, 회사는 필요 서류의 갱신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전자계약 체결)**

- ① 회사는 입점 승인 및 상품 선정이 완료되면 전자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거래계약서를 협력사에 발송한다. 협력사는 회사의 전자계약시스템(<https://ecs.hnsmall.com>)을 통해 표준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에는 [별표 제1호]의 기준에 따른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권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② 협력사가 제1항에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협력사의 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 단, 회사 내부 추가 심사를 통하여 계약의 이행, A/S 및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입점을 허가할 수 있다.

## 제 3 장 상품 선정 절차 및 기준

### 제10조(상품 선정 절차)

① 회사의 TV방송을 위한 상품 선정은 「입점시스템」을 통해 제안 받은 협력사의 상품에 대해 열린상품선정기구의 평가를 거쳐 공정하게 진행한다. 열린상품선정기구의 상품 선정 주요 절차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제6조에 따라 입점제안 및 팀 단위 서류 심사를 통과한 상품을 선정 대상으로 상정한다.
2. 담당 MD와 협력사 간 상담을 완료한 상품에 대하여 열린상품선정기구에서 선정을 실시한다.
3. 열린상품선정기구는 선정 결과를 확정하여 관련 협력사 등에게 통보한다.

② 협력사는 「입점시스템」을 통해 열린상품선정기구의 선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재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상품 선정의 평가 기준은 카테고리 및 상품특성에 따라 [별표 제2호]의 항목에 따른다.

④ 최종 방송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판매 효율이 현저히 낮아 판매가 중단된 상품이 리뉴얼 등을 통해 상품 판매를 재개할 경우, 상품 선정 절차에 따라 재진행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 제11조(상품 선정 기준 및 위원회 구성)

① 열린상품선정기구는 협력사로부터 제안받은 TV방송을 위한 상품에 대해 [별표 제2호]에 따라 기능성, 차별성, 구성, 가격, 방송표현, 구매의사 항목(全 카테고리 적용) 등 상품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단, 전단의 평가 항목은 시장환경 또는 회사의 운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 기획성 상품에 해당하는 패션, 침구, 잡화, 렌탈, 여행 상품의 경우에는 팀(임직원) 품평회 등 회사가 정한 예외적인 방법으로 상품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열린상품선정기구는 상품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해당 상품을 우선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상세기준은 [별표 제3호]에 의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제조사 및 유통업체가 공급하는 상품
2. 소외계층(장애인·노인 등)이 공급하는 상품 또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
3. 농수축산민이 최종 생산자이거나 농수축산민이 직접 공급하는 상품

- ④ 회사는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규칙인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64조(방송금지)에 해당하거나 기타 방송심의 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입점 제안을 반려할 수 있다.
- ⑤ 기타 열린상품선정기구의 회의 소집, 위원 구성, 상품 선정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 4 장 품질 검사

### 제12조(품질 검사 절차)

- ① 협력사의 상품이 회사의 TV방송 상품으로 선정된 경우, 해당 상품은 반드시 회사의 주관부서를 통해 품질 검사, 공정관리 및 배송 전 검사에 대한 품질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회사는 품질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품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품질 검사 시에는 상품 관련 각종 서류 검사, 실물 검사, 기능·성능 테스트, 공정관리 및 실사 등을 통해 법적 기준, 안전성, 기능 및 성능, 포장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협력사는 품질 검사의 업무진행 절차, 샘플 제출 방법 및 카테고리별 제출서류 등 상세 내용을 회사의 「입점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제13조(품질 검사 승인)

- ① 협력사는 품질 검사 승인을 위하여 샘플 및 관련 품질 검사 서류를 회사의 품질 검사 담당자에게 신속히 제출해야 한다.
- ② 협력사는 샘플 제출 시 고객에게 배송되는 포장형태로 제출해야 하며, 회사가 정한 상품별 포장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 ③ 회사는 샘플 검사 완료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샘플을 협력사에게 반환하거나 구매하여야 한다.

### 제14조(공정관리)

- ① 공정관리는 품질 검사 승인 이후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대량불량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활동으로, 상품생산 단계에서의 공장지도 및 초기품질 안정을 위해 시행한다.
- ② 협력사는 공정관리 과정에서 지적된 불량상품에 대한 개선이 완료된 이후에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제15조(실물검사)** 회사는 상품의 안정성 및 외관의 이상 여부, 상품사양, 표시사항, 구성, 포장상태의 적합성 등을 관련 절차 완료 이후에도 확인할 수 있다.

## 제 5 장 공정거래 등

### 제16조(이해관계자 배제)

- ① 회사의 임직원이 협력사 임직원과 친인척 등 이해관계자인 경우, 당해 협력사 임직원과 관계가 있는 회사의 임직원은 해당 상품 선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
- ② 회사는 제1항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 사규에 의거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이해관계자란 협력사 임직원과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회사의 임직원을 말한다.
  1.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2. 협력사 임직원이 과거 회사에 근무한 이력이 있고, 해당 협력사 임직원과 동일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우
  3. 협력사 임직원이 회사의 계열사 임직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고, 회사 임직원과 관련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제17조(유통벤더사의 독점 방지)

- ① 회사는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제조사로부터 상품을 직접 납품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조사가 물류, AS처리 등 통상적으로 필요한 유통 기능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대행할 유통벤더사를 통하여 입점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단서 조항과 관련하여, 특정 유통벤더사가 납품을 독점하지 않도록 하고, 동일 상품에 대해 복수의 유통벤더사로부터 제안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에 입각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선정한다.

### 제18조(불만처리 청구 운영)

- ① 상품 및 협력사 선정과 관련하여 불만이 있는 협력사는 회사의 「입점시스템」 또는 「협력사 파트너스 시스템」 내 익명 제보 채널인 「H&S 신문고(레드휠슬)」, 회사 사옥 내 설치된 「신문고」 등의 채널을 통해 불만을 접수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불만 사항(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해 감사부서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개선 및 징계 등 조치를 취하고 협력사에 최종 처리 결과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하도록 한다.
- ③ 회사는 협력사의 불만 처리와 관련하여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보호하고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제보자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 부 칙

1. 이 기준은 2020년 12월 18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2. 이 기준은 2021년 06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기준은 2026년 01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기준은 2026년 03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HOME &  
SHOPPING

[별표 제1호] 입점 가능 신용평가 등급 및 이행보증보험 기준

구분	기준
신용평가 등급 (유효기간 내)	CCC 등급 이상
이행보증보험 (서울보증보험) * 최소가입기준	일반상품: 1천만원-1년 식품: 3천만원-1년 / RISK상품: 3천만원-3년 여행상품: 1억-1년 / 무형상품: 1억-3년

※ 단, 대기업 및 회사 내 중소기업 특화 사업(일사천리 사업 등) 활성화 대상 기업의 경우 심사 및 확인을 거쳐 면제 가능



[별표 제2호] 상품 선정 기준

1. 상품 선정 주요 공통 평가 기준 (세부 항목 등 변동 가능)

항목	세부 내용
기능성	맛, 기능, 성능, 효과, 효능 등 상품 품질이 좋아 사용 시 기대효과가 있는가
차별성	기존상품과 비교하여 확실한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는가
구성	구성이 적절하며 유사상품 대비 경쟁력이 있는가
가격	가격이 합리적이며 유사상품 대비 경쟁력이 있는가
방송표현	방송판매에 적합한 상품인가 (컨텐츠, 시연성 등)
구매의사	구매매력도가 높아 구매할 의사가 있는가

2. 상품 카테고리별 주요 평가 기준 (세부 항목 등 변동 가능)

항목	특화 항목	세부 내용
일반식품	맛/시즌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맛의 경쟁력이 높은가</li> <li>• 계절 · 시즌 수요에 적합한가</li> </ul>
건강식품	효능/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섭취 시 기대되는 기능 · 효능이 명확한가</li> <li>• 원료의 임상 · 특허 · 인증 등 신뢰 요소가 충분한가</li> </ul>
생활/주방/가전	편의성/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 편의성을 높여주는가</li> <li>• 사용법 설명 및 시연이 직관적인가</li> </ul>
이미용(뷰티)	호감도/기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랜드 · 패키지 호감도가 높은가</li> <li>• 텍스처 · 향 · 색상 기호성이 우수한가</li> <li>• Before/After 시연이 명확한가</li> <li>• 셀럽/화제성/마케팅 요소활용 가능 여부</li> </ul>
침구	소재/기능성/시즌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단 · 충전재 품질이 우수한가</li> <li>• 보온성/통기성 등 기능이 명확한가</li> <li>•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인가</li> </ul>
의류/잡화	디자인/핏/소재/브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패턴 · 핏이 대중성 있는가</li> <li>• 소재 · 부자재 품질이 우수한가</li> <li>• 컬러 · 스타일 트렌드 반영 여부</li> </ul>
렌탈	경제성/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 이용 시 경제성이 있는가</li> <li>• 유지관리 · A/S가 안정적인가</li> <li>• 고객 생활 개선 효과가 명확한가</li> </ul>
여행	일정/구성/안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정 구성 대비 가격 경쟁력이 있는가</li> <li>• 주요 관광 포인트가 매력적인가</li> <li>• 안전성 · 현지 운영 능력이 검증되었는가</li> </ul>

※ 열린상품선정기구 판단에 의하여 변경 가능

[별표 제3호] 상품 우선 선정 기준

대상	세부 내용	비고
중소기업	제조사 및 협력사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 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MD는 협력사를 통하여 「중소기업확인서」를 수령 후 유관부서에 제출해야 함
소외계층	장애인이 공급하는 상품 또는 장애인·노인 등 기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	MD는 협력사를 통하여 관련 입증서류를 수령 후 유관부서에 제출해야 함
농수축산품	농수축산민이 최종 생산자 혹은 직접 공급하는 상품	MD는 소속부서 팀장의 결재를 득해야 함

